2002. 6. 13 실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추진활동 참고자료]

6. 13 지방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LE0319076

당 부 말 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는 6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경기와 한국인의 축제인 지방선거를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당당히 과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가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이 자료집에는 설교·설법·미사 등의 강연자료와 주보·소식지 등의 게재자료, 구내방송 및 시설물 문안 등의 예시를 담았습니다.

○ 아무쪼록 종교단체지도자께서는 이 자료집을 참조하시어 각 종단의 실정에 맞도록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LE0319076

차 례

Ⅰ. 강 연 자 료

1.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 보다 정책으로 선택하자 1

2. 선거법위반행위 반드시 신고하자 2

3.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자 3

참고자료

가.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결과 / 4

나.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 / 6

다.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7

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단속·조치 결과 / 8

마. 공직선거 투표율 분석자료 / 9

Ⅱ. 주보·소식지 등 인쇄물 게재자료

1. 공명선거 활용표어 12

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절차 13

LE0319076

3.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14

가. 각종 행사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 14

나. 의례적·사교적 행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 15

다. 단체·행사에의 찬조 등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 16

라.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 17

마. 직무상·업무상 행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 18

4. 공명선거에 관한 시 모음 19

가. 한사람 한사람 우리 모두가(시인 용혜원) / 19

나. 언제나 나부터 깨끗하게(시인 용혜원) / 20

5.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21

Ⅲ. 구내 방송 문안

투표참여 안내 24

Ⅳ. 시설물(현수막) 설치 문안

1. 불법선거운동 배격 27

2. 투표참여 권장 27

LE0319076

Ⅰ. 강 연 자 료

1.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 보다 정책으로 선택하자

2. 선거법위반행위 반드시 신고하자

3.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자

<참고자료>

가.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결과

나.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

다.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단속·조치 결과

마. 공직선거 투표율 분석자료

LE0319076

1.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 보다 정책으로 선택하자

주 요 내 용

- ㅇ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방선거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
- ㅇ 혈연·학연·지연 등 구 시대적 낡은 선거문화는 사라져야
- ㅇ 정책중심의 선거실현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 과시해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방선거

ㅇ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함께 치르는 지방선거임

ㅇ 세계인의 이목이 지방선거에 집중되어 있음

ㅇ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임

연고중심 선거풍토 사라져야

ㅇ 능력 없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을 이용하려고 함

ㅇ 일부 그릇된 유권자도 이에 동조하고 있음

ㅇ 이제는 구 시대적인 연고중심의 선거풍토는 없어져야 함

능력과 정책을 보고 뽑아야 함

ㅇ 앞으로 4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책이 분명한 사람을 뽑아야 함

ㅇ 정책을 비교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정책의 우선순위로 판단해야 함

ㅇ 반드시 탈피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당당히 과시할 때임.

LE0319076

2. 선거법위반행위 반드시 신고하자

주 요 내 용

- ㅇ 금권, 관권, 흑색선전 · 비방 등 불법행위가 공명선거분위기 해처
- ㅇ 바른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종교인이 앞장서야
- ㅇ 선거법위반행위는 바로바로 신고해서 엄중 대처해야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분위기 해처

ㅇ 선거부정 3대 사범은 금권, 관권, 흑색선전 · 비방행위임

ㅇ 선거사범의 특성은 죄의식이 없고 직접 피해자가 없어 관대함

ㅇ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기본적인 원인임

※ 1.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 : 참고자료(나)
2.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단속 · 조치결과 : 참고자료(라)

바른선거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ㅇ 바른선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바르게 살라는 종교이념과 같음

ㅇ 종교인이 바른선거 의식개선을 위한 선도자가 되어야 함

ㅇ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 존경과 신뢰받는 종교인상 정립

선거법위반행위 강력히 대응해야

ㅇ 선거사범 신고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임

ㅇ 선거법 위반행위는 신고해서 엄중 처벌하면 반드시 근절될 것임
※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참고자료(다)

ㅇ 종교인이 나서면 공명선거는 절로 될 수 있음을 인식함

LE0319076

3.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자

주 요 내 용

- ㅇ 투표율이 대의민주정치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낮아짐
- ㅇ 정치적 무관심 또는 방관자적 태도는 정치수준을 더 낮게 함
- ㅇ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함

투표율이 낮아 대의민주정치 위협

ㅇ 최근 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음

※ 2000. 4. 13 제16대 국선 투표율 - 57.2%, '98. 6. 4 지방선거 투표율 - 52.7%

ㅇ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참여율이 특히 저조 함

ㅇ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서 노는 날로 인식하는 경향 있음

※ 1.「제16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결과 : 참고자료(가)

2. 공직선거투표율 분석자료 : 참고자료(마)

정치적 무관심 - 정치수준 더 낮게

ㅇ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수준과 일치한다고 함

ㅇ 정치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큰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함

ㅇ 깨끗한 선거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첩경임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ㅇ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투표율을 낮게 하는 원인임

ㅇ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한다는 생각이 발전하게 하는 것임

ㅇ 종교인이 앞장서서 선거에 참여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것임

LE0319076

가.『제16대 국회의원선거』유권자 의식조사결과

- 본 유권자 의식조사는 중앙선관위에서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2000년 4월 6일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임 -

▣ 제16대 총선에 대한 인지도 및 투표참여 의향

1) 「제16대 총선」에 대한 관심도

- 관심이 있다 : 54.5% 【매우 많음 13.5%, 다소 관심이 있음 41.0%】
- 관심이 없다 : 45.5% 【별로 관심 없음 38.4%, 전혀 관심 없음 7.1%】

2) 「제16대 총선」투표 비참여 이유

-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 44.9%
-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 23.5%
-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 22.4%
-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에 : 5.1%
-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 2.6%
- 귀찮아서 : 1.5%

3) 「제16대 총선」지지후보 선택 기준

- 인물·인품 : 61.3%
- 정책·공약 : 13.9%
- 소속 정당 : 10.4%
- 정치 경력 : 6.1%
- 주위의 평가 : 5.4%
- 기 타 : 2.9%(출신지역 1.0, 개인적 연고 0.7, 무응답 1.2%)

LE0319076

▣「제16대 총선」분위기에 대한 평가

1) 과거선거 대비「제16대 총선」분위기의 비공명 평가 이유

- ㅇ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 70.6%
- ㅇ 유권자의 금품 등 요구 : 9.6%
- ㅇ 언론의 불공정 보도 : 8.0%
- ㅇ 사직당국의 소극적 단속 : 4.7%
- ㅇ 공무원 선거개입 : 3.3%
- ㅇ 기 타(무응답 1.8 포함) : 3.8%

2)「제16대 총선」출마자의 선거법 준수 정도 평가

- ㅇ 잘 지키고 있다 : 53.2% 【매우 잘 준수 3.8%, 대체로 준수 49.4%】
- ㅇ 지키지 않고 있다 : 27.7% 【전혀 비 준수 3.7%, 대체로 비 준수 24.0%】
- ㅇ 잘 모름 : 19.1%

3)「제16대 총선」과정의 문제점

- ㅇ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 : 42.0%
- ㅇ 지역감정 유발 : 19.8%
- ㅇ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 : 17.3%
- ㅇ 유권자의 시민의식 결여 : 8.1%
- ㅇ 금품·향응 제공 및 선심관광 : 7.0%
- ㅇ 관권개입 : 1.2%
- ㅇ 후보자의 자질문제(무응답 4.4) : 4.6%

4)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응 방법

- ㅇ 모른 체 하겠다 : 41.6%
- ㅇ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 : 23.0%
- ㅇ 사회단체위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겠다 : 11.1%
- ㅇ 불법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항의하거나 제지하겠다 : 8.1%
- ㅇ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겠다 : 4.2%
- ㅇ 잘 모름 : 12.0%

LE0319076

나.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

▣ 이런 후보자를 선택합시다

○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후보자

○ 지역 발전에 대한 올바른 비전 제시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

○ 이념적 성향 및 역사의식 등 가치관이 건전하고, 정책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후보자

○ 자신의 권력 추구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

○ 청렴하고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자

○ 자신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후보자

▣ 이런 후보자는 뽑지 맙시다.

○ 돈이나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여 유권자를 현혹하는 후보자

○ 지연·혈연·학연 등 지역연고를 이용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자

○ 근거없는 비방, 흑색선전을 일삼는 후보자

○ 지키지도 못할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

○ 동창회·향우회 등 사조직을 조직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후보자

○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후보자

LE0319076

다.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법위법사항은 조사·확인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포상금 내역**

포 상 금 액	신 고 사 례
최고 1,000만원	금품·향응제공 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
최고 500만원	관권선거·흑색선전 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
최고 50만원까지	일반 선거범죄

◉ **신고방법 및 신고처**

방 법	신 고 처
서면, 전화, 방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비밀보장**

포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 **1588-3939**입니다.

LE0319076

참고자료

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단속·조치결과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계	**3,017**	**248**	**408**	**1,676**	**565**	**120**
금품·음식물 제공	594	79	147	238	106	24
비방·흑색선전	101	5	51	5	1	39
허위학력·경력 게재	139	8		127	2	2
유사기관·사조직	54	23	12	17	1	1
공무원 등 선거개입	40	5	4	25	3	3
시설물·인쇄물 관련	1,326	45	138	787	330	26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69	3	2	42	22	
의정 활동 관련	57	1		36	19	1
정당 활동 관련	48	3	5	26	12	2
연설회 등 관련	205	5	3	164	27	6
집회·모임 등 이용	249	39	10	165	28	7
여론 조사 관련	31	1	5	17	3	5
단속 업무 방해	40	30	6	4		
기 타	64	1	25	23	11	4

※ 사이버이용 선거법위반사례 : 687건(삭제 654, 수사의뢰 18, 경고 7, 주의 8)

LE0319076

참고자료

마. 공직선거 투표율 분석자료

▣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변동상황

구 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투표율 (%)	95.5	91.9	91.1	90.7	84.3	72.1	76.1	73.2	73.0	77.1	78.4	84.6	75.8	71.9	63.9	57.2

▣ 최근선거 투표율 비교

구 분	제15대 대선 ('97. 12. 18)	제15대 국선 ('96. 4. 11)	제16대 국선 ('00. 4. 13)	제1회 지선 ('95. 6. 27)	제2회 지선 ('98. 6. 4)
투표율 (%)	80.7	63.9	57.2	68.4	52.7

▣ 최근 선거의 연령별 투표율(%)

구 분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세 이상
제15대 국선('96)	44.8	43.8	57.7	68.0	75.3	81.3	74.4
제15대 대선('97)	66.4	69.9	80.4	84.9	87.5	89.8	81.9
제 2회 지선('98)	37.8	30.5	40.3	51.8	62.4	73.8	71.2
제16대 국선('00)	39.9	34.2	45.1	56.5	66.8	77.6	75.2

LE0319076

Ⅱ. 주보·소식지 등 인쇄물 게재자료

1. 공명선거 활용표어

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절차

3.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가. 각종 행사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나. 의례적·사교적 행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다. 단체·행사에의 찬조 등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라.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마. 직무상·업무상 행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4. 공명선거에 관한 시 모음

   가. 한사람 한사람 우리 모두가(시인 용혜원)

   나. 언제나 나부터 깨끗하게(시인 용혜원)

5.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LE0319076

1. 공명선거 활용표어

공 명 선 거 표 어 내 용	활용구분
선거가 끝나도 당신의 양심은 남습니다.	선거기간전·중
공명선거! 참여하면 보람. 함께 하면 희망.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 모두가 화합하는 선거	
나부터 공명선거, 다함께 밝은 미래	
올바른 선택이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판단은 현명하게, 선택은 신중하게, 투표는 빠짐없이	
당신의 한 표가 한국의 얼굴입니다.	선거기간중
깨끗한 한 표! 나라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투표참여!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투명한 선거, 소중한 한 표, 빛나는 미래	
소중한 한 표, 작지만 가장 큰 실천입니다.	
이 작은 한 표가 커다란 희망을 키웁니다.	

※ 선거기간전 : ~ 5. 27까지, 선거기간중 : 5. 28 ~ 6. 13까지

LE0319076

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절차

<선거일 : 2002년 6월 13일 (목)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는 한 장소에서 두 번에 나누어 실시합니다.
투표용지는 1차에서 3매, 2차에서 2매를 받습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 먼저 「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각각 1매씩(3매)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와 색상이 같은 투표함에 넣고,

◉ 다시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선거」의 투표용지를 각각 1매씩(2매)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와 색상이 같은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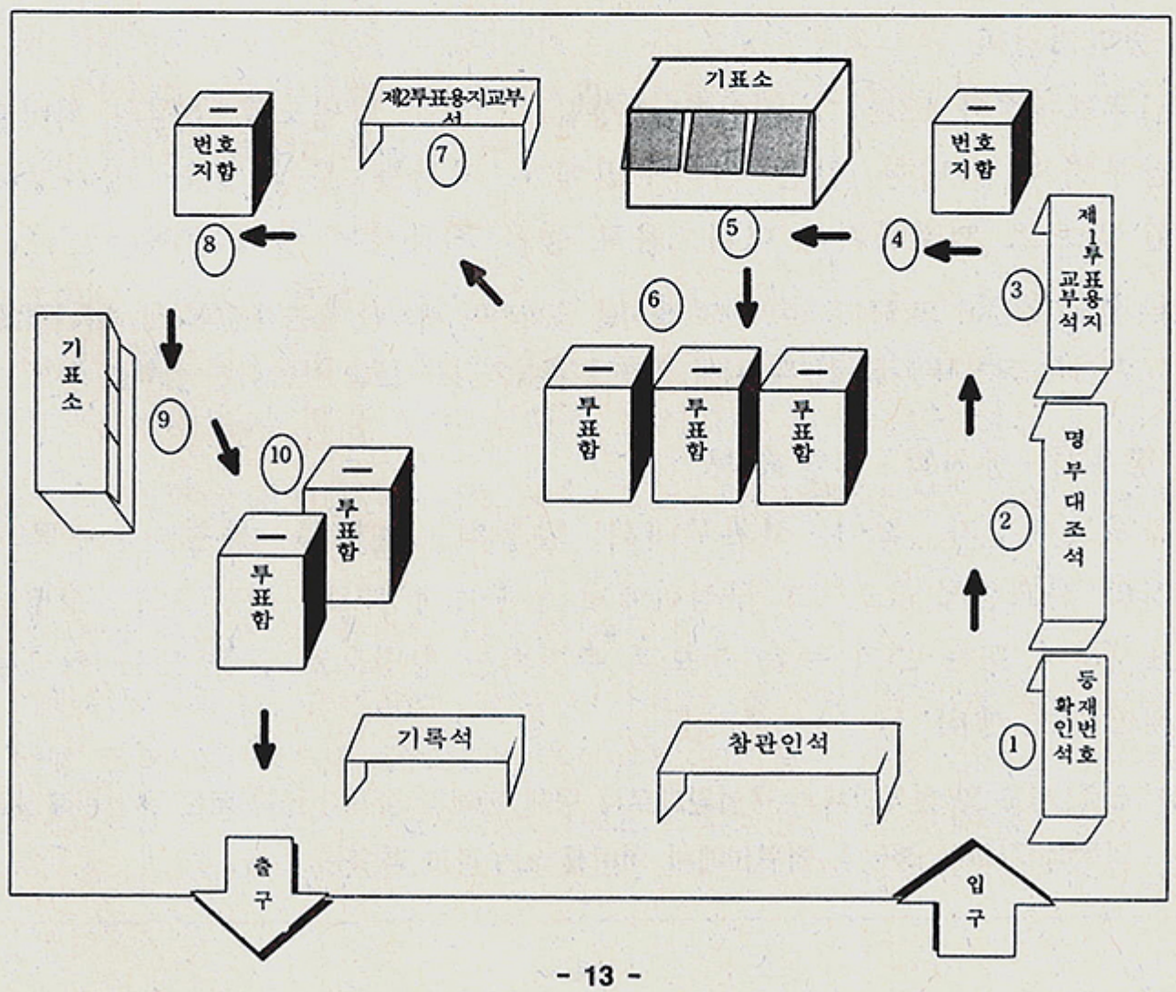

LE0319076

3.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가. 각종 행사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1. 공공기관 준공식 · 기념식 등 각종행사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기공식 · 준공식 · 체육행사 ·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참석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공공기관 · 공익시설 등의 준공식 · 개소식 등에 초청된 유관기관 · 단체의 장 및 행사와 관련있는 한정된 범위안의 내빈, 소속임 · 직원 등에게 주최측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상장과 부상의 수여)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는 가능

2. 출판기념회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에게 저서를 무상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제공하거나 다과 ·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기간전에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자신의 저서 또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3.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내의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친목회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

LE0319076

나. 의례적 · 사교적 행위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1. 선거구민의 경조사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현금 또는 15,000원을 초과하는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

2. 노인위안잔치 등

노인위안잔치 등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노인회관 방문

선거구내의 노인회관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4. 사찰 · 교회 등에 헌금

부처님 오신날, 부활절 등 종교적 기념일에 시주 · 헌금 등의 명목으로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선거구내의 사찰 · 교회 · 성당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시주 · 헌금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가능

5. 어린이날 축하 등 명목의 학용품 제공

어린이날, 입학 · 졸업축하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학생 또는 그 학부모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학용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LE0319076

다. 단체·행사에의 찬조 등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1. 관광·야유회 등

○ 입후보예정자 등이 일반선거구민의 관광·야유회 기타 놀이모임이나 그 모임참석자 등에게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청와대·국회의사당·통일전망대 등 주요기관·시설 등에 대한 관람을 주선·알선 또는 후원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방문절차에 관한 선거구민의 문의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은 가능

2. 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 등

○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경연대회 등에 명예대회장·고문 등의 명목으로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주민체육의 날·등산대회·걷기대회·자전거달리기대회 등 선거기간 개시일전 31일까지 개최가 가능한 행사에서 다수의 참석 선거구민에게 기념품·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군민체육대회 등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는 가능. 다만, 찬조물품 또는 시상물품(포장지 제외)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제외

LE0319076

라. 구호적 · 자선적 행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1. 불우이웃돕기 · 구호 · 위문활동 등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연말연시 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 · 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 등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단체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주는 행위는 가능.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는 행위는 제외

※ 자선 · 구호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 · 법인을 통하여 소년 · 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 · 구호금품을 주는 행위는 가능. 다만, 제공금액과 대상자를 확대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2.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유료양로시설 · 유료요양시설 · 노인회관 · 경로당 등에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수용시설 등)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제공자의 직 · 성명 표시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 복지시설을 제외)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LE0319076

마. 직무상·업무상 행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의정활동보고회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시 참석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참석자에게 떡·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 민원상담·무료변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진료, 법률·세무 등에 대한 무료상담 또는 무료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정당의 각급 당부의 당사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민원상담 또는 인권옹호적 차원의 무료변론 행위는 가능. 다만, 변호사 기타 전문직업인을 당사 등에 배치하여 민원상담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포상행위

이익단체를 비롯한 사적단체의 행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시상·포상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역의 명예를 빛낸 자를 포상하기 위한 공적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기준에 적합한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에 대한 시상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1일까지 가능

○ 간담회·집회개최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수렴 명목으로 주민대표나 각종 모임·단체의 구성원들과 간담회·민원상담 기타의 방법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뜬 후 읍·면·동장, 공무원·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LE0319076

4. 공명선거에 관한 시 모음

한사람 한사람 우리 모두가

하늘이 맑아야 별들이 빛나듯이
정치가 바로되야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고기가 살 수 있듯이
정치가 깨끗해야 국민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손끝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처럼
우리의 손으로 올바른 정치인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열매를 많이 거두듯이
딴 마음 갖지않고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부정부패가 사라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선거로
깨끗한 정치인을 선출할 때
우리나라의 내일은 희망차게 활짝 열려가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 시인 용혜원 -

LE0319076

언제나 나부터 깨끗하게

이 나라에 바른 정치를 위하여 바른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맥으로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을 뽑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선택 방법으로 인하여 나라의 정치에 많은 문제를 만들었으니 먼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시사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소서.
순간의 선심 공세나 말뿐인 공약에 현혹됨이 없이 실현 가능한 일들을 올바르게 이루어가는 인물을 선택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곧바르게 서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게 하여 주소서.

의롭고 선한 성품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고 불행한 이웃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소서.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나가며
언제나 굳굳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인물을 뽑게 하소서

선거전이나 선거후에는 변함없이 지역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겸손히 노력하는 인물을 뽑게 하여 주소서.

뽑고나서 다시 선거 할 때가 올 때까지 후회됨이 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고 성원해 주고 싶은 인물을 뽑게 하소서

올바로 뽑힌 인물들과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소서.
선거를 위하여 나 자신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게 하소서

언제나 나부터 깨끗하게 시작하게 하소서.

- 시인 용혜원 -

LE0319076

5.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 선거일 : 2002. 6. 13(木) -

시 행 일 정	실 시 사 항	실시주체
5. 21(화)까지	· 투표구 명칭과 구역 공고	· 구 · 시 · 군위원회
5. 22 ~ 5.26 (5일간)	· 부재자 신고	· 구 · 시 · 읍면의 장
5. 27~5. 29 (3일간)	· 선거인명부 열(공)람 및 이의신청	· 선거권자
5. 28~5. 29 (2일간)	· 후보자 등록신청	· 정당 · 후보자
5. 28~6. 13 (선거기간)	· 후보자재산신고사항 공개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 병역신고 및 전과 기록사항 공개	
	· 후보자 소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납부실적 공개	
5. 18~6. 13 (27일간)	· 선거부정감시단 구성 · 운영	· 구 · 시 · 군위원회
5. 29(금)까지	· 합동연설회 일시 · 장소 공고	· 선거구위원회
6. 6(목)까지	· 투표용지 모형공고	· 구 · 시 · 군위원회
6. 6~6. 8 (3일간)	· 부재자투표소 투표	· 구 · 시 · 군위원회
6. 13(목)	· 투 표 · 개표 및 당선인 결정	· 구 · 시 · 군위원회 · 선거구위원회
7. 14~7. 20 (7일간)	·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 사본, 열람기간 · 장소 등 공고	· 당해 위원회

LE0319076

Ⅲ. 구내 방송 문안

○ 이 방송문은 오는 6. 13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소중한 선거권을 유권자 모두가 빠짐없이 행사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종교지도자께서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적정한 내용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0319076

투 표 참 여 안 내

<방송기간 : 2002. 6. 1 ~ 6. 13>

○ 신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곳은 경건한 곳입니다만,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오는 6월 1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대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신도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기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LE0319076

Ⅳ. 시설물(현수막) 설치 문안

○ 이 문안은 오는 6. 13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소중한 선거권을 유권자 모두가 빠짐없이 행사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종교지도자께서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적정한 내용이 현수막이나 게시판 등으로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0319076

1. 불법선거운동 배격

6월 13일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깨어있는 시민의식 설곳없는 불법선거

(종 교 단 체 명)

6월 13일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가 끝나도 당신의 양심은 남습니다

(종 교 단 체 명)

2. 투표참여 권장

6월 13일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참여하면 보람 함께하면 희망

(종 교 단 체 명)

6월 13일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종 교 단 체 명)

LE0319076